

의안번호	제 636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7년 6월 26일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636호
----------	-------

제출연월일 : 2017년 6월26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전국 광역지자체들은 MICE산업 선점을 위하여 인프라 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에 반해 전시컨벤션시설이 없는 지역은 우리 도가 유일하고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17.5.18.)
- KTX 국토중심 오송을 명실상부한 국가교통망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하여 전시컨벤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하며
- 중앙정부가 지정한 충북지역전략산업인 바이오의약·화장품 산업을 오송을 중심으로 세계화 및 국제적 위상 확립을 위하여 충북 전시관 부지취득 및 신축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105-10번지 등 116필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 270-3번지 등 103필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1번지 등 7필지
- 사업기간 : 2017~2020 (4년)
- 매입규모 : 182,191㎡
- 사업비 : 600억원 (도 50%, 청주시 50%)

《충북 청주전시관 신축》

-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105-10번지
- 사업기간 : 2018~2021 (4년)
- 신축규모 : 40,176m²
- 사 업 비 : 800억원 (도 50%, 청주시 50%)

3.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201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건	182,191.00	60,000,000				
	건물	1건	40,176.00	80,000,000				
	기타							
1	토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평리 105-10번지 등 226필지	182,191.00	60,000,000	2020	충북 청주전사관 건립		신규
	건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평리 105-10번지	40,176.00	80,000,000	2021	충북 청주전사관 건립		신축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p> <p>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p> <p>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 style="margin-left: 20px;">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 style="margin-left: 20px;">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 style="margin-left: 20px;">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립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